旅費支給規程

[1989年 5月 8日 制定]
變更 1992. 3. 4 議決
變更 2004. 5. 21 議決
變更 2008. 10. 28 議決

第1條 (目的) 이 規程은 協會의 任員 및 職員 등이 會務遂行上 出張에 所要될 旅費의 支給基準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條 (出張費의 支給基準) 出張旅費의 支給基準은 〔別表1〕과 같다.

第3條 (出張命令과 稟議)

① 協會長은 會務遂行上 出張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 會 任員 및 職員에 대하여 出張을 命한다.

② 出張은 國內 및 國外出張으로 區分할 수 있다.

③ 出張命令을 받은 者에 대하여 第2條에 定한 旅費基準에 의하여 旅費를 支給한다.

第4條 (旅費 등 支給) 出張旅費에는 實費運賃 및 宿泊料, 食費, 食卓料, 現地交通費를 포함하여 支給한다.

第5條 (地方會員에 대한 旅費支給) 이 會의 會務遂行上 필요로 인하여 地方會員이 이 會 또는 서울等地에 出張한 때에는 〔別表2〕에 의하여 出張旅費를 支給한다.

第6條 (出張報告書) 第3條에 의하여 出張을 마친 任員과 職員은

出張完了後 3日內에 出張報告書를 協會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.

第7條（出張旅費 등의 精算）

① 出張者가 出張命令 日數보다 초과하여 出張任務를 마쳤거나 出張地의 變更 등으로 出張旅費의 支給額보다 초과된 때에는 協會長에게 出張旅費超過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.

② 第1項의 경우에는 協會長은 出張報告書를 檢討한 後 出張旅費의 精算支給을 하여야 한다.

附 則

①（施行日）이 規程은 1989年 5月 8日부터 施行한다.

附 則 <變更 1992.3.4>

①（施行日）이 規程은 理事會의 決議있는 날로부터 施行하되 1992年 4月 1日부터 適用한다.

附 則 <變更 2004.5.21>

第1條（施行日）이 規程은 理事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.

附 則 <變更 2008.10.28>

第1條（施行日）이 規程은 200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.

〔別表1〕

區 分	任 員	職 員			
		1級	2級	3,4級	5級技能職
航 空 賃	實 費	實 費	實 費	實 費	
鐵 道 賃	새마을(特) 다만, 고속철도 운행지역은 고속철도	새마을 다만, 고속철도 운행지역은 고속철도	새마을 다만, 고속철도 운행지역은 고속철도	새마을	새마을
船 賃	특 1 등실	1 등 실	1 등 실	2 등 실	3 등 실
自動車賃	實 費	實 費	實 費	實 費	實 費
1回 食費	15,000원	12,000원	10,000원	8,000원	7,000원
1日宿泊費	호텔實費	호텔實費	호텔實費	여관實費	여관實費
日 當	70,000원	35,000원	28,000원	17,000원	15,000원

<변경 2004.5.21, 2008.10.28>

〔別表2〕

航 空 賃	實 費
鐵 道 賃	새 마 을 다만, 고속철도 운행지역은 고속철도
船 賃	1 등 실
自 動 車 賃	實 費
1 回 食 費	15,000원
1 日 宿 泊 費	호 텔 實 費
日 當	70,000원

<변경 2004.5.21, 2008.10.28>